

#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원호녹지) 해제에 관한 청원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, 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  
더불어민주당 용산 제1선거구 김제리 의원입니다.
  
- 본 의원이 소개한 ‘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원호녹지) 해제에 관한 청원’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  
- 용산구 원호로 2가 1-2일원(총 19필지, 1,048.8㎡)은 경의선 철길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변 도심지의 완충역할을 위해 1977년 건교부 고시 제137호에 따라 완충녹지(원호녹지)로 지정되었습니다.

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는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대기오염, 소음, 진동, 악취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본 지역은 경의선이 운행하고 있을 때에도 도시계획시설 녹지로 지정만 하였을 뿐 녹지로 조성하지 않았으며, 철도시설

이 지중화 되어 기존 철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때도 매입이  
나 별도의 조성계획 없이 방치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.

- 도시계획시설은 그 지정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하여야 합니다.  
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 
녹지조성 없이 완충녹지로 유지하던 서울시는 2020년 7월  
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가 다가오면서 본 토지를  
보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

이미 철도 지중화와 기존 철도부지의 공원 조성에 따라 완충녹  
지의 지정목적은 상실하였음에도 서울시에서 부지매입을 추진하  
는 것은 20년간 행사하지 못했던 사유재산권의 지속적인 침해  
이며,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이라 하겠습니다.

본 청원은 원호녹지의 지정해제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 
목소리가 모여 제출된 것입니다. 이에 서울시가 원호녹지  
지정해제에 힘쓸 수 있도록 청원 통과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.

-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 
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이 청원을 심의함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 
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